

2026년 제3회 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제3회 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5월 11일

성남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

1.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근무 예정부서	채용 분야	채용 직급	채용 인원	계약 기간	직무내용
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	정책 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3명	채용일로부터 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•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•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작성, 참석지원•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※ 일반임기제공무원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관련 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, 제27조제2항
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자치부 예규)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「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

□ 공통 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 12. 31. 이전 출생한 사람)
- 주소지와 성별은 제한 없음
 - ※ 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결 격 사 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-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-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-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-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-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-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-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「상법」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·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·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.

□ 세부 요건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

- 임용분야별 [응시자격 기준]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.
-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 단,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- 모든 경력은 군대 등 의무복무 경력은 제외함.
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 산정은 시간할 계산됨.(불명확할 경우 불 인정될 수 있음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채용예정 분야	채용예정 직급	자격기준
정책지원관	지방행정 주사보 (일반임기제)	<p>【자격 요건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서 지정된 공공기관, 공기업, 연구소, 민간기업 등에서 행정, 법무, 세무, 재정, 회계, 지방자치, 경제, 재난안전, 조사·감사, 복지, 도시계획, 토목, 건축 관련 업무 실무경력 <p>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를 상세히 명시 ※ 지방의회 근무경력자 또는 정책지원관 근무경력자 우대</p>

4. 시험 방법

□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 제4항)

□ 2차 시험 : 면접시험(개별 역량면접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
- 검정항목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에서 정한 아래의 5개 항목으로 함
 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※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□ 합격자 결정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함
- ※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

□ 시험 일정

모집 공고	원서 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인성 검사	면접 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05. 11. ~ 05. 22.	2026. 05. 26. ~ 05. 28.	2026. 06. 09. 전후	2026. 06. 13.	2026. 06. 19. 전후	2026. 06. 26. 전후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※ 면접시험 예정일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면접시험 시험일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시험일정은 개인별로 통지하지 아니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원서 접수

- 접수 기간 : 2026. 05. 26.(화) ~ 2026. 05. 28.(목) / 3일간
- 접수 장소 :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(인사담당자)
- 접수 방법 :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 - 방문 접수
 - 접수시간 : 09:00 ~ 18:00(중식시간 12:00 ~ 13:00 제외)
 - ※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 - 성남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실에서 **응시수수료 7천원(성남시 수입증지) 납부 후 응시원서 접수**
 -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자에 한함)
 - 대리인(타인)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 가능
 - 등기우편 접수
 -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- ※ 택배, 퀵서비스 접수 불가
 - **응시수수료(7천원)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**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하여야 함
 -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확인 요망
 - 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
 - 등기우편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(여수동) 성남시의회 의회동 3층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 인사담당자
 - ※ 우편봉투 겉면에 '성남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' 표기

6. 제출 서류

구분	내용	비고
①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1호 서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응시수수료(성남시 수입증지) 7천원 납부 후 제출○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및 제출서류(기준일 : 응시원서 접수일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증명서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•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(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: 「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6조)	필수

구 분	내 용	비고
② 이력서 1부 (별지 제2호 서식)	○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※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 기재 금지	필수
③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3호 서식)	-	필수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4호 서식)	-	필수
⑤ 서류전형서류 1부 (별지 제5호 서식)	○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확인서 (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한함) ○ 해당사항만 작성(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)	필수
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(별지 제6호 서식)	○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	필수
⑦ 동의서 1부 (별지 제7호 서식)	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자필 서명 필수)	필수
⑧ 동의서 1부 (별지 제8호 서식)	○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자필 서명 필수)	필수
⑨ 동의서 1부 (별지 제9호 서식)	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(자필 서명 필수) ※ 주민등록표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동의서 미제출 가능	필수
⑩ 경력증명서 1부 (별지 제10호 서식)	○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※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는 발행기간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※ 정규직으로 상근 근무한 경우에도 상근(주 40시간) 여부 표기 ○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,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기관의 인사기록서식, 업무분장표 또는 인사담당자 자필 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○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비정규직, 프리랜서,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,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※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(예시 :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, 근무 경력은 2년으로 인정) ※ 법인 및 단체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능	필수

구 분	내 용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 증명자료 제출 ※ 폐업회사의 경우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 가능 ※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 효력 불인정 ※ 재직 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	
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또는 1577-1000번에서 발급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,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※ 용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○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	필수
⑫ 최종학교 졸업 (학위)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○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	
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분야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	
⑭ 각종 대회 수상, 상훈,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자에 한함 	

□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
-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-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의 경우 공중 번역된 한글 번역본 제출
- 제출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크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
- ※ 제출서류 편철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양면인쇄 금지

7. 보수 수준

-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, 구체적인 보수는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

구 분	근무 시간	상 한 액	하 한 액
정책지원관 [일반임기제 7급(상당)]	주 40시간	70,782천원	50,272원

- ※ 연봉 외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
- 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8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성남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회차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학력·경력·자격 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해 드립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회·채용신체검사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,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연봉외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,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,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평정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(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).
- 본 공고내용은 성남시의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,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	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인사운영팀(☎ 031-729-2568)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